

本協會 建議案 積極 反映키로

建築士法 등 關聯法 改定 및
行政措置에 의한 改善事項

本協會는 지난 定期總會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90년 2월 1일부터 대행업무를 거부키로 決意한 바 있으나 建設部 등 관계 許可廳과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한,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이전까지 일괄하여 처리
- 건축사 행정처벌시 건축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 감리자의 무한적인 업무책임 한계에 대한 업무 범위 정립
- 공사시공상 허용오차 인정
- 감리자가 위법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감리자 행정 처분 배제
- 건축법상 적합한 경우 건축 불허가 처리지연 배제
- 행정청의 임의 규제 사항 지양 등
행정조치 개선사항과
- 건축사의 2중 처벌제도 폐지
- 건축사법 시행규칙상의 건축

사 처분기준 개선
• 구체적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 행정처벌 배제 등 관계 법령상 개정사항을 건의하여 지난 25일 건설부로부터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행정조치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本協會의 建議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回信을 받게 되었다.

한편 本協會는 정책당국과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난 30일 全國市道支部 회장, 분소회장, 회원이 참석한 對策會議 및 理事會를 열고 조사 및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일선 행정기관 및 전국 시도지부회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건축법령연구소에서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 법제위원회의 협의('90. 2. 9)를 거쳐 법령개정에 있어 본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제1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90년도 제1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가 金基壽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지부회장 및 姜基世연금연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개최되어 기본연금회비의 결정등 주요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본연금회비 결정 승인
- '89년도분 실적을 기준으로 93만4백원으로 기본연금회비를 산출한 원안대로 승인
-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 및 반환여부 결정
- 연금규정에 정한 회원기본연금회비 금액에 미달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연금 회비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키로 하

고 연금규정 제9조(실적년수)제4항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연금회비 납부년수만을 계산한다"를 총회시 "1987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금회비 납부년수만을 계산한다"로 문구수정키로 함

-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 및 반환금에 대한 당해년도 회계세입·세출조치 승인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금 및 반환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회계로 수입 및 지출키로 한 원안대로 승인
- ◆ 기본 연금회비 온라인 개설 은행 및 예치방법 결정
- 이사회에서 본협회 회관에 입주하게 될 은행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결정키로 함

定期監査 實施

'90년도 임시총회를 대비한 定期監査가 지난 29일부터 각 시도지부별로 3월9일 완료 예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시중인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 29~1. 30 : 제주
1. 31~2. 1 : 부산
2. 2~2. 3 : 경남
2. 5~2. 6 : 대구
2. 7~2. 8 : 경북
2. 9~2. 10 : 충북
2. 12~2. 13 : 광주
2. 14~2. 15 : 전남

2. 16~2. 17 : 전북
2. 19~2. 20 : 대전
2. 21~2. 22 : 충남
2. 23~2. 24 : 강원
2. 26~2. 27 : 경기
3. 2~3. 3 : 인천
3. 5~3. 6 : 서울
3. 7~3. 9 : 본부

제2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0 제2회 理事會가 지난 30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조사·검사대행업무 개선방안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 비위원회대책특별위원회 운영규칙(안) 승인
 -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 조사·검사대행업무 개선방안 협의 결정과 그에 따른 대책 결정
 - 제24회 정기총회('89.11.28)에서 조사·검사대행업무와 관련,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90.2.1일부터 동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관계당국에 제시한 11개 조항중 행정조치로 가능한 8개항은 행정조치에 의하여 개선토록 하고,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3개항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사·검사대행업무는 계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사항을 일선행정기관 및 각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회원업무 등 건축행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로 함

◆ 월정회비 미납회원 조치 승인

- 서울지부 요청에 따라 월정회비 미납회원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하기로 함

〈協議事項〉

- ◆ 전국건축사대회 명칭 결정
 - 금번 전국건축사대회 명칭을 "90 전국건축사대회"로 결정함

'90 全國建築士大會 기본계획 확정

本協會는 구랍 21일 제13회 이사회에서 '90년도 全國建築士大會를 본부 주관하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의함에 따라 지난 17일 대회집행위원회를 구성,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전국건축사대회의 명칭은 제2회 이사회에서 "'90 全國建築士大會"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목)부터 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개최된다.

"건축환경과 국민의식-주거환경과 우리사회, 건축사의 사

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될 이번大會는 대회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 교환 및 연수, 회원의 지위향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건축문화의 지역적 균등 발전 도모를 위해 특별강연회, 건축인의 밤 행사, 건축사 작품발표회 및 우수기·자재 및 CAD 품평회 등의 행사가 실시된다.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支部(會長 李一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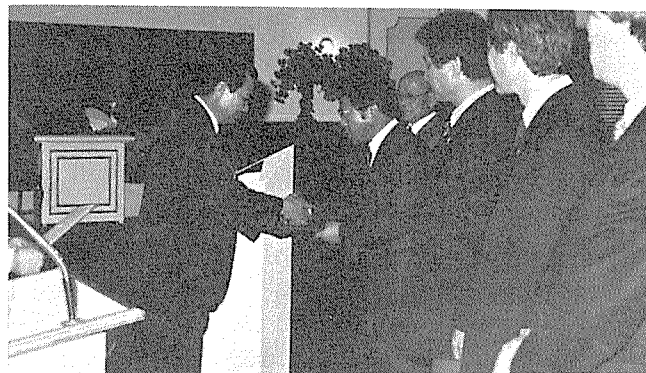
건축관련공무원 간담회 개최

京畿지부(회장 李一潤)는 건축민원업무 및 재반건축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對관청과의 업무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부임원 및 도내 건축분야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겸 '89년도 송년회를 구랍 29일 수원 부라운호텔에서 개최하는 한편 '89건축행정전실화 대책추

진 유공회원 11명에게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전달하였다.

이날 표창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 조병원, 조길웅, 한진택, 윤영재, 권순재, 길철균, 임광택, 윤문혁, 우선명, 김중권, 김진열 회원



경기지부 유공회원 도지사 표창장 수여

'90 全國建築士大會 일정표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제 1 일 3. 22 (목)	10 : 00 ~13 : 30	전국 대의원 총회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	
	13 : 30 ~14 : 30	대의원 증식		
	15 : 00 ~16 : 55	전국 건축사 대회 개 회 식	종합 전시장 (올림픽아홀)	
	16 : 55 ~17 : 00	결의문 채택		
	17 : 00 ~18 : 00	특별 강연회		
	18 : 00 ~22 : 00	건축인의 밤		
제 2 일 3. 23 (금)	10 : 00 ~12 : 00	특 별 강 좌 (연 수)	종합 전시장 (올림픽아홀)	건축사연수 는 3개분야
	12 : 00 ~12 : 50	증 식		
	13 : 00 ~14 : 20	특 별 강 좌 (연 수)	(국제회의실) (대회의실)	
	14 : 40 ~16 : 00	특 별 강 좌 (연 수)		

協會消息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직원직무교육 실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1월 3일 '90년도 사무식을
갖고 사무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90년도 상반기 직
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남지부 사무식 및 직원직무교육

建築士 基本年金會費 납입 안내

건축사 연금 지급 조건표

'89년도 建築士 基本年金회비가 연금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건축사
연금운영위원회의 의결('90.1.30)을 거쳐
93만4백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9 기본연금회비는 지난해 연금회비
총액(설계+감리+감정회비) 58억5천4백
7만9천3백70원을 실적회원 3천1백46명으
로 나누어 그 값의 1/2로 산출되었으며,
89년도 기본연금회비 미달 및 무실적회원은
미달차액을 오는 2월 28일한 소속
시·도지부 총무과에 납부하시면 실적년
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달회원이 28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기납부연금회비를 환불처리하는 한편 실
적년수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 '89 기본연금회비 : 930,400원

◎ 납입기한 : 1990년 2월 28일限

◎ 납입 및 환불요청 장소 :

소속지부 총무과

※ 기본연금회비 미달시 환불·실적년수
제외조치

● 실적년수 기준

1. 협회창립일~1986년도까지
=회원가입년수×1/2
2. '87~'88=연금회비 납부년수
3. 1989년부터 : 기본연금회비 이상
납부하면 실적년수 인정

구 입회년도	분 실적년수	복지연금 (월지급) (원)	퇴직연금 (일시금) (원)	사망 위로금(퇴 직연금포함액임) (원)
1965년	13.5년	753,620	25,120,800	37,681,200
1966년	13년	725,710	24,190,400	36,285,600
1967년	12.5년	697,800	23,260,000	34,890,000
1968년	12년	669,890	22,329,600	33,494,400
1969년	11.5년	641,980	21,399,200	32,098,800
1970년	11년	614,060	20,468,800	30,703,200
1971년	10.5년	586,150	19,538,400	29,307,600
1972년	10년	558,240	18,608,000	27,912,000
1973년	9.5년	530,330	17,677,600	26,516,400
1974년	9년	502,420	16,747,200	25,120,800
1975년	8.5년	474,500	15,816,800	23,725,000
1976년	8년	446,590	14,886,400	22,329,600
1977년	7.5년	418,680	13,956,000	20,934,000
1978년	7년	390,770	13,025,600	19,538,400
1979년	6.5년	362,860	12,095,200	18,142,800
1980년	6년	334,940	11,164,800	16,747,200
1981년	5.5년	307,030	10,234,400	15,351,600
1982년	5년	279,120	9,304,000	13,956,000
1983년	4.5년	251,210	8,373,600	12,560,400
1984년	4년	223,300	7,443,200	11,164,800
1989년	3.5년	195,380	6,512,800	9,769,200
1985년	3년	167,470	5,582,400	8,373,600
1986년	3년	167,470	5,582,400	8,373,600
1987년	2년	111,650	3,721,600	5,582,400
1988년	1년	55,820	1,860,800	2,791,200

● 연금계산 방법

* 복지연금 계산 : 퇴직연금×3/100 (단, 91년~94년까지 0.2/100씩 조정하며
95년부터는 퇴직연금×2/100)

* 퇴직연금 계산 : 실적년수×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2배

* 사망위로금계산 : 퇴직연금×50/100 (만 65세미만인 경우), [66세 : 45/100, 67세 :
40/100, 68세 : 35/100,74세 : 5/100, 75세 : 최대 기본연금회비×2]